

창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15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155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81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박미혜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1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81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6,427,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27,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D생, 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6,427,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27,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2,280,046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일부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16행, 제3면의 표 중 제3란, 제4란 부분(표의 제4열, 제5열), 제5면 제11,

12행의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15%를 구하는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부분, 제6면 제4, 5행의 "2016. 12. 1. 'J은행 카드대출이야. 그거라도 좀 빌리자. 내가 월급타면 갚을게 생활도 해야 한 두달에 갚을게'라는"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3, 4행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8,907,551원, 위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는 3,372,495원이 남아 있다(합계 12,280,046원)."를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6,427,415원이 남아 있다."로 고치며, 제5면 제8행, 제10행의 각 "12,280,046원"을 각 "6,427,415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와 계모녀 관계에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별다른 왕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C의 채무관계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C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을 제7호증)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I과의 통화 녹취(을 제9호증)의 내용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의 채무관계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일견 부합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인 I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와 C이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서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2016. 10. 11. 오전 8시 12분경 피고에게 "오늘 10시까지 오천이 없으면 집이 남에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죽으려고도 했지만 아빠는 어떻게 불쌍해 죽겠어..지금 내가 이리저리 해결하는 줄아아(알면) 쓰러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오늘 해결하고 네가 안사면 급하게 내노면(내놓으면) 팔리겠지 그러면 네 돈 갚을게 B아 엄마 한번 살려줘라 살면서 갚을게."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C이 그 당시 적어도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경 C이 피고에게 "일단 우리 오빠 이천 넣(었)대 집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따 집 보러 온다네 그냥 너네 신경 쓰느니 해결하고 읊으로 가지 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으나 그 내용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C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전보경

판사김희수

별지